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월 25일

미래·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2년 1월 7일

나. 제안자: 윤유선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월 17일

라. 상정일자: 제2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.25.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윤유선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(안 제1조)

2)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돌봄 아동의 연령규정 삭제하고, “방과 후 돌봄”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(안 제2조)

- 3) 돌봄 시설 이용 우선순위를 구체화 함(안 제7조)
- 4) 돌봄 시설 이용 대상을 감안하여 비용 면제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)
- 5) 돌봄 시설의 위탁 연장 기간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
- 6) 협의회 위촉직 위원 위촉관련 규정을 정비함(안 제10조)
- 7) 협의회 운영관련 소집 서면 통보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(안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해당부서: 아동청소년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2. 1. 7. ~ 1. 11.) 결과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허은옥)

가. 개정취지

-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더욱 명확히 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 제정의 목적을 의미 전달이 보다 명확하도록 개정함
- 안 제2조(정의) “돌봄 아동”의 대상 중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아동에서 초등학생의 연령에 맞도록 “18세 미만”을 삭제함

- 안 제7조(돌봄 시설의 설치·운영) 제2항의 돌봄시설이용 우선순위를 현재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,
  - 이용 우선순위: 맞벌이 가정, 부 또는 모가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구, 초등 저학년, 돌봄 공백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
- 같은 조 제4항에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돌봄시설의 취지에 맞도록 저소득층 이용료 면제 규정을 삭제함
  - 현재 해당규정으로 이용료 감면을 받고 있는 아동 없음
- 안 제8조(돌봄 시설의 위탁·운영) 제2항에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재위탁·재계약 횟수와 기간을 정하지 않아 1회에 한해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함
- 안 제11조(회의운영 등) 제2항 임시회 소집 시 서면통지 규정을 삭제함
- 그 밖에 안 제2조, 제6조, 제11조에서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

##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봄 사업과 돌봄 서비스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(서울시-우리동네키움센터)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※ 운영현황 별첨
- 우리구에서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 3월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곳을 운영

중에 있으며, 신규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음

- 조례 제정 이후 키움센터 운영과정에서 일부 현행 운영상황과 맞지 않는 일부조항과 잘못된 표현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- 붙임 1)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현황 1부.  
2) 관계법령 1부.

## 참고

##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현황

### □ 시설현황

-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강서구 내 10개소 확충 목표
- 강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 운영, 2개소(공항동, 화곡8동) 신규 설치 진행 중

(2022. 1. 20. 현재)

구 분	강서1호점(염창동)	강서2호점(빙화3동)	강서3호점(화곡본동)	강서4호점(빙화2동)
위 치	양천로67길 93-22, 2층	금남화로162, 1층	까치산로6길 49, 1층	양천로10길38 106동 1층
면 적	223㎡(67평)	121㎡(37평)	132㎡(40평)	267㎡(80평)
개 소 일	2020년 3월	2020년 2월	2021년 3월	
시설구분	공공유희시설	기부채납시설	민간건물 임차	기부채납시설
인 력	센터장 1 돌봄교사 2	센터장 1 돌봄교사 2	센터장 1 돌봄교사 3(시간제)	센터장 1 돌봄교사 2
정원/현원	25/25	20/20	20/20	25/25
위탁체	아하! 열린교육센터	KC대학교	은빛날개후원회	해피피플
저소득 감면 아동수	-	-	2명 (이용료-법인전입금)	-

## □ 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